

## 재정위원회 규정

---

### 제1조 (명칭)

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재정위원회라 칭한다.

### 제2조 (목적)

본 위원회는 총회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기획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룩하는 데 있다.

### 제3조 (위원)

본 위원회 위원은 15인으로 하되, 총회 공천 12인(여성 1인 이상), 총회 회계, 부회계, 재정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그 임기는 3년조로 한다.

### 제4조 (조직)

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서기 1인을 둔다.

### 제5조 (회집)

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의를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로 소집한다.

### 제6조 (임무)

본 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.

1.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안한다.
2. 예비비의 사용과 항목 조정 및 변경을 심의하여 결의한다.
3. 총회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하여 총회에 제안한다.

### 제7조 (결의)

본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8조 (개정)

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1993년 9월 제78회 총회 제정  
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 
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